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93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금 투자 근거 신설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8

I. 개요

1.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39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형두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4. 7. 30.
- (3) 회 부 일 : 2024.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

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7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금 투자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방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략)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②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현행	개정안
7. (생략) ③ ~ ⑥ (생략)	<u>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국민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목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 유지’와 ‘수익의 최대 증대’를 규정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을 정하고 있음.¹⁾

- 1)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7.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8.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9.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0.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1.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²⁾에 따른 ‘국가첨단전략 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밀접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제정되어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고시하였음('24. 2월).

<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고시 현황 >

구분	산업명	세부 설명
반도체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 16나노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 픽셀 0.8 μ m 이하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14nm 이하급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첨단 패키징 산업	○ FO-WLP, FO-PLP, FO-PoP, SiP 등의 방식으로 반도체 패키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구분	산업명	세부 설명
반도체 (계속)	연관산업(자동차·통신·IoT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반도체 산업	○ 실리콘·화합물 기반의 전력반도체(Discrete, Power IC, Module 등), 이동수단용 반도체(MCU, ECU, Smart Sensor 등)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이차 전지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 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고용량 양극재 산업	○ 니켈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양극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래파이트 복합음극, 황 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배터리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	○ 배터리 광물의 제련·정련, 사용후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및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등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고용량 양극재 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디스플레이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패널 산업	○ AMOLED 패널(3,000ppi 이상의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친환경 퀀텀닷(QD) 소재 패널 산업	○ 반치폭 40nm 이하이고 색재현율 REC2020 기준 90% 이상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초대형 칩크기 30 μ m 이하, 모바일 칩크기 20 μ m 이하, 초소형 칩크기 5 μ m 이하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크기 1 μ m 이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여 투명 디스플레이, XR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산업

구분	산업명	세부 설명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산업	○ 세포 배양·정제 기술이 적용된 항체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 적용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주: 2024년 8월 현재

□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은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도록 관리·운용되어야 하고,³⁾ 이 과정에서 투자자산의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 범위 내에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안정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향상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도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업이자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이지만, 가입자(국민)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특정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독립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6대 원칙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1. 수익성의 원칙: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3)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의 원칙:**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의 원칙:**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의 원칙:**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지속 가능성의 원칙:**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6. **운용 독립성의 원칙:**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⁵⁾을 시행하고 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산업군을 명시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5)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5076-320):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액은 900억원임.